

저작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 관 명 (부 서 명)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연 월 일	2026. .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저작권신탁관리업의 재허가 제도를 도입하며, 회원의 권리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관리·감독 체계를 정비하는 「저작권법」이 개정(법률 제21595호, 2026. 4. 28. 공포, 2026. 10. 29. 시행) 됨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의 재허가 절차 및 정관 변경허가 신청절차, 전문경영인의 요건을 마련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 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정관 변경허가 신청절차(안 제19조의4 및 별지 제50호의2서식)
- 나.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재허가 절차(안 제19조의5 및 별지 제50호의3서식)
- 다. 전문경영인의 요건(안 제19조의6)
- 라. 저작권신탁관리업 임원의 경제적 이익 등 신고서 제정(안 제19조의7 및 별지 제50호의4서식)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의 : 관계부처 의견수렴 예정
-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 실시예정

3) 행정규제 : 협의예정

저작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저작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4부터 제19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의4(정관의 변경허가) ①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법 제105조제13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관 변경절차 완료 후 2주일 이내에 별지 제50호의2서식의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변경 사유서
2. 정관개정안
3. 정관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4. 정관변경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관 변경의 필요에 관한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9조의5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의5(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재허가절차) ① 법 제105조의2제2항에 따라 재허가를 받으려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허가유효기간 만료일 6개월 전까지 별지 제50호의3서식의 재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직전 허가 또는 재허가 신청시 제출한 업무운영 계획의 이행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향후 업무운영 계획
3. 법 제105조제2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법 제105조의2제3항 각호에 따른 증명서류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05조의2제2항에 따라 재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재허가 기간
2. 재허가에 부과되는 조건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재허가 심사를 할 때에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법 제105조의2제2항에 따른 재허가가 종전의 허가 또는 재허가 유효기간 내에 완료되지 못한 경우에는 재허가 여부에 관한 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종전의 허가가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재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9조의6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의6(전문경영인의 요건) 법 제106조제7항의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저작권 업무, 조직 경영·관리 업무 또는 행정 업무에 경험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1. 문화예술이나 문화산업 관련 단체 또는 업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저작권 위탁관리업체 또는 보상금수령단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해당 단체 현 재직자는 채용공고 3개월 이전에 퇴직한 사람에 한정한다)
3. 민간기업체에서 임·직원으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임·직원으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람

제19조의7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의7(신고서 작성 및 제출) 영 제51조의9제1항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 제50호의4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50호의2부터 제50호의4까지의 서식을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9조의4(정관의 변경허가) ①</u> <u>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법 제105조</u> <u>제13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고자</u> <u>하는 경우에는 정관 변경절차 완료</u> <u>후 2주일 이내에 별지 제50호의2</u> <u>서식의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에</u> <u>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u> <u>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u> <u>한다.</u> <u>1. 정관변경 사유서</u> <u>2. 정관개정안</u> <u>3. 정관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u> <u>회의록</u> <u>4. 정관변경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u> <u>증명할 수 있는 서류</u> <u>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문화</u> <u>체육관광부장관은 정관 변경의 필요에</u> <u>관한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u> <u>③ 제1항에 따른 정관 변경허가</u> <u>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u> <u>「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u> <u>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u> <u>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u> <u>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u>
<u><신 설></u>	<u>제19조의5(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u> <u>재허가절차) ① 법 제105조의2제2항에</u>

따라 재허가를 받으려는 저작권신탁
관리업자는 허가유효기간 만료일
6개월 전까지 별지 제50호의3서식의
재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직전 허가 또는 재허가 신청시
제출한 업무운영 계획의 이행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향후 업무운영 계획
3. 법 제105조제2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법 제105조의2제3항 각호에
따른 증명서류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05
조의2제2항에 따라 재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
하여야 한다.

1. 재허가 기간
2. 재허가에 부과되는 조건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재허가 심사를 할 때에는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법 제105조의2제2항에 따른 재
허가가 종전의 허가 또는 재허가
유효기간 내에 완료되지 못한 경우
에는 재허가 여부에 관한 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종전의 허가가
유효한 것으로 본다.

<신 설>

<신 설>

⑤ 제1항에 따른 재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9조의6(전문경영인의 요건) 법 제106조제7항의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저작권 업무, 조직 경영·관리 업무 또는 행정 업무에 경험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1. 문화예술이나 문화산업 관련 단체 또는 업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저작권 위탁관리업체 또는 보상금 수령단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해당 단체 현 재직자는 채용공고 3개월 이전에 퇴직한 사람에 한정한다)
3. 민간기업체에서 임·직원으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임·직원으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람

제19조의7(신고서 작성 및 제출) 영 제51조의9제1항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 제50호의4서식에 따른다.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저작권 신탁관리 업자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일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저작권법」 제105조제1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관의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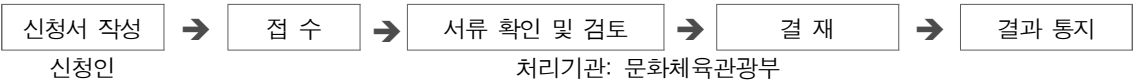
첨부서류	1. 정관변경 사유서 2. 정관개정안 3. 정관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4. 정관변경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저작권신탁관리업 재허가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법인명(사업자명)		대표자명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전자우편

희망하는 재허가기간(5년 이내)

「저작권법」 제105조의2제2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5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저작권신탁관리업의 재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직전 허가 또는 재허가 신청시 제출한 업무운영 계획의 이행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향후 업무운영 계획 3. 「저작권법」 제105조제2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저작권법」 제105조의2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허가증 발급
--------	---	-----	---	-----	---	-----	---	--------

신청인

처리기관: 문화체육관광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저작권신탁관리업 임원의 경제적 이익 등 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일자	처리기간
------	------

① 신고인	② 성 명		③ 생년월일	
	④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⑤ 전자우편	
	⑥ 주 소			
⑦ 저작권신탁관리업자로부터 취득한 보수·수당 등 일체의 경제적 이익				
⑧ 직전 회계연도에 회원의 지위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자로부터 취득한 사용료 및 보상금				
⑨ 사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공정한 신탁관리 업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사항				

「저작권법」 제106조의4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8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저작권신탁관리업자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저작권신탁관리업자로부터 취득한 보수·수당 등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직전 회계연도에 회원의 지위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자로부터 취득한 사용료 및 보상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사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공정한 신탁관리 업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한 서류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